

I

수입제도 변경사항

1.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관련 신규 정보 업데이트

1) FDA, 식품시설등록에 대한 보고의무사항 가이드 (Compliance Policy Guide) 배포

- 2014년 6월 2일, FDA에서 식품시설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에 대한 보고의무사항 가이드를 배포함
- FDA의 직원에게 연방식품의약화장품 조례(FD&C Act)에서 식품시설등록 조항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음
- 식품시설등록관련 준수사항은 우선적으로 식품 혹은 동물 사료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 가공, 포장, 보관시설에만 적용됨

2) 연방식품의약화장품(FD&C Act) 식품시설등록 보고의무사항 가이드(Compliance Policy Guide) 주요내용
가. 식품시설등록

- ①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국내외 식품 혹은 동물 사료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 가공, 포장 보관시설에 적용됨
- ② 식품시설 검사 담당자는 FDA에서 배포한 식품시설등록에 관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를 시설 담당자에게 우선 제공함

나. 격년마다 식품시설등록 재등록 요구

- ① 연방식품의약화장품에 의거하여 격년마다 식품시설등록 재등록 요구
- ②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FDA로 등록 서류 제출

다. 식품시설등록 정지

- ① 사람, 동물에게 건강상 혹은 생명의 위협을 일으킬만한 여지가 발생된다면 해당 식품 시설은 등록정지 대상에 포함
- ② 식품시설등록이 정지되면 미국으로 수입, 수출은 물론 미국 내 타주로의 거래 또한 금지
- ③ 국내식품시설의 등록이 정지될 시, 그 시설이 위치한 관할구역의 담당자는 관할구역 내 혹은 타주로의 거래를 확실히 방지할 대책이 필요

3) 시사점

- FDA의 직원들이 연방식품의약화장품 조례(FD&C Act)의 식품시설등록 조항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우선 FDA는 우선적으로 업계중사자와 수입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자발적인 법규준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진행될 강제집행 전략에 대한 대비 또한 생산업체들에게 요구됨

2. 관련 웹사이트

FDA 게재 내용:

Operational Strategy for Implementing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95105.htm>

II

통관 컨설팅 Q&A

○ 주요 질의/응답 정리

Q: 과일이 포함된 시럽의 경우, 관세의 기준이 되는 함량이 궁금합니다. 또한 함량에 따른 관세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A: 문서화된 기준은 없지만 보통 실제 과일 함량 30%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시럽의 경우 블루베리가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럽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6.4%의 관세가 적용되며 30% 이상의 경우에는 블루베리 식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2.2%의 관세를 받습니다. 물론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무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시럽 이외에 최근 유행하는 사탕수수(Cane Sugar)의 사용은 쿼터에 적용을 받아 높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대미 식품수출시, 아세설팜(Acesulfame), 아스파탐(Aspartame), 카르나우바 왁스(Carnauba Wax), 리보플라빈(riboflavin) 등은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합니까?

A: 나열하신 식품첨가물들은 미국 내 식품에 사용가능한 승인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식품첨가제 승인(pre-market approval)을 받거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리스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Q: 계란 및 우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VS(Veterinary Services) 수입허가증은 예외 없이 요구되니까?

A: 문의하신 VS(Veterinary services) 수입허가증은 대부분의 계란 및 우유 성분이 포함되는 식품의 대미수출시 요구됩니다. 그러나 해당 성분들이 포함되었더라도 구운(Baked) 제품이거나 건조(Dried) 우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진행되는 식품 통관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담당자들이 실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건조된 팔의 경우 대미수출이 가능여부와 담당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A: 팔의 경우는 동식물검역소(APHIS-PPQ)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건조 및 냉동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농약성분 검출 여부 같은 검사내용은 기존 곡물들과 동일합니다.

※ 대미수출업체의 질의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했으며 미국(뉴욕) 식품전문 통관사의 전문컨설팅 내용임

2014년 5월 미국 뉴욕 통관보류사례 세부내역 (중 11건)

발생 일자	품목	기관	기관 조치 사항	사후 처리 사항	결과
5.5	월병류 (mooncake)	AQI/CBP & 수의서비스/ 동식물검역소	VS 수입허가증 및 동물건강인증서 요구	계란, 우유 성분 함유가 되었더라도 구운제품은 면제사항	보류 해제
5.5	냉동반죽	AQI/CBP & 수의서비스/ 동식물검역소	우유 혹은 계란 성분 함유 확인을 위한 제품성분표 요구	우유성분 함유 확인을 위한 성분표 및 동물건강인증서 미제출	반송 처리
5.6	한약제 (삼계탕용)	AQI/CBP & 수의서비스/ 동식물검역소	적하목록(ManifestList) 검토 후 사전억류	농산물 검역계획(AQI)의 검사 진행	보류 해제
5.8	아이스 케이크 식용장식	AQI/CBP & 수의서비스/ 동식물검역소	제품성분표 요구	우유 성분이 포함되었지만 건조(Dried) 우유 성분으로 면제사항	보류 해제
5.12	블루베리 시럽	CBP	정확한 관세율 적용을 위한 제품성분표 요구	제품성분표 제출	보류해제
5.13	밤(Chestnut) 통조림	FDA	시설공장등록증(FCE), 생산제품(SID) 증명 번호 요구	FDA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FCE & SID번호 제출 사항 확인	폐기 처리
5.13	조(Millet)	AQI/CBP & 수의서비스/ 동식물검역소	적하목록(ManifestList) 검토 후 사전억류	농산물 역계획(AQI)의 검사 결과, 도정되지 않은 조가 1쿼트에 28개 이상 발견	폐기 처리
5.15	참치 통조림(오일)	FDA	오염에 따른 억류	FCE & SID 제출	보류 해제
5.19	떡제조용 믹스	FDA	오염에 따른 억류	FDA 인증랩을 통한 검사 실시	보류 해제
5.22	번데기 (Silkworm Chrysalis)	FDA	부정표기 여부 확인을 위한 성분표 및 샘플링 요구	성분표 검토 및 샘플링 진행중	보류중
5.29	비스킷	AQI/CBP & 수의서비스/ 동식물검역소	우유성분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성분표 요구	제품성분표 제출	보류 해제

* AQI(농산물검역계획), CBP(관세청), 수의서비스(VS), 동식물검역소(APHIS)